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894 |
|----------|------|

발의연월일 : 2009. 9.3.

발 의 자 : 정진교 의원

외 9인

## 개정이유

-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방법 및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함 (안 제31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도로법 제76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타시 가로수 포상금 기준(고양, 부천, 과천)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안산시의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관리청”이라 함은”을 ““관리청”이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담당자”라 함은”을 ““관리담당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로수”라 함은”을 ““가로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갱신”이라 함은”을 ““바꿔심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식”이라 함은”을 ““메워심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가로수지주대”라 함은”을 ““가로수지주대”란”으로, “활착율”을 “활착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가로수보호틀”이라 함은”을 ““가로수보호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로수보호덮개”라 함은”을 ““가로수보호덮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가로수보호대”라 함은”을 ““가로수보호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나무은행”이라 함은”을 ““나무은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조경시설”이라 함은”을 ““조경시설”이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보식)”을

“보수(메워심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재건축·재개발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를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를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에는 보·차도”를 “보·차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제목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갱신·보식”을 “바꿔심기·메워심기”로 한다.

제23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 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갱신을”을 “바꿔심기를”으로, “보식”을 “메워심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식·갱신”을 “바꿔심기·메워심기”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제22조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위탁하고자 할 때”를 “위탁할 경우”로,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로 한다.

①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중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를 “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부담금”을 “제28조 및 제29에 따른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27조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신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최초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신고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은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제33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훼손자 부담금          | 포상금지급액  | 비고 |
|------------------|---------|----|
| 10만원 미만          | 10,000원 |    |
|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30,000원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50,000원 |    |
| 100만원 이상         | 70,000원 |    |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31조제3항 관련)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차량에 의한 훼손일 경우 차량번호)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고자: (인)

000 장 귀하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의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안산시의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 <p><b>제2조(용어의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청"이라 함은 관련법령 등에 의거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는 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li> <li>2. "관리담당자"라 함은 가로수·보호수·녹지 등을 관리하도록 관리청이 지정된 자를 말한다.</li> <li>3.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녹음제공 등을 통하여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유지 등을 이루기 위하여 시가지 및 하천변 등의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li> <li>4. "깎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li> <li>5.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가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li> </ol> | <p><b>제2조(용어의정의)</b>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청"이란 ----- 따라 -----</li> <li>2. "관리담당자"란 -----</li> <li>3. "가로수"란 -----</li> <li>4. "바꿔심기"란 -----</li> <li>5. "메워심기"란 -----</li> </ol> |

| 현행   | 개정안  |
|--|--|
| <p>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p>   | <p>-----</p>   |
| <p>6. "<u>가로수지주대</u>"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p>                          | <p>6. "<u>가로수지주대</u>"란 ----- 활착물-----</p>                                |
| <p>7. "<u>가로수보호틀</u>"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 <p>7. "<u>가로수보호틀</u>"이란 -----</p>  |
| <p>8. "<u>가로수보호덮개</u>"라 함은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공기순환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p>                               | <p>8. "<u>가로수보호덮개</u>"란 -----</p>  |
| <p>9. "<u>가로수보호대</u>"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p>                             | <p>9. "<u>가로수보호대</u>"란 -----</p>   |
| <p>10. "<u>나무은행</u>"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재도를 말한다.</p>                      | <p>10. "<u>나무은행</u>"이란 -----</p>   |
| <p>11. "<u>조경시설</u>"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p>                           | <p>11. "<u>조경시설</u>"이란 -----</p>   |
| <p>가.~나. (생략)</p>  | <p>가.~나.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담당자는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 <p>제5조(조경시설의 관리) ①-----<br/>-----<br/>-----<u>각 호</u>-----<br/>-----</p> |

| 현행  | 개정안  |
|---|--|
| <p>1. ~ 5. (생략)</p> <p>②관리담당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p>  | <p>1. ~ 5. (현행과 같음)</p> <p>②-----<br/>-----<u>보수(메워심기)</u>-----<br/>-----<br/>-----<br/>-----</p>  |
| <p><b>제6조(나무은행) ①~②(생략)</b></p> <p>③관리청은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 <p><b>제6조(나무은행) ①~②(현행과 같음)</b></p> <p>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br/>-----<br/>-----<br/>-----</p>                         |
| <p><b>제7조(녹화지원) ①</b>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 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b>제7조(녹화지원) ①</b>----- 각 호의 어느 하나 -----<br/>-----<br/>-----<br/>-----<br/>-----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 -----<br/>-----<br/>-----</p> |
| <p>1. ~ 3. (생략)</p> <p>②(생략)</p> <p><b>제8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b>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활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p>   | <p>1. ~ 3.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b>제8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b>-----<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p>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p> <p>3. (생략)</p> <p>②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식재한다.</p> <p>3. ~ 4. (생략)</p>                           | <p>-----</p> <p>--범위에서-----</p> <p>3. (현행과 같음)</p> <p>②-----각호-----</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범위에서-----</p> <p>-----</p> <p>3. ~ 4. (현행과 같음)</p> |
| <p>제19조(갱신 및 보식) ①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5.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p>  | <p>제19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할 경우에는 -----</p> <p>-----</p> <p>-----</p> <p>-----</p>     |
| <p>제20조(가지치기)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p> <p>②~③(생략)</p> | <p>제20조(가지치기) ①-----</p> <p>-----</p> <p>-----범위에서-----</p> <p>-----</p> <p>-----</p> <p>-----</p> <p>-----</p> <p>-----</p> <p>-----</p> <p>②~③(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b>제21조(병해충의 방제)</b>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u>깎신</u>·<u>보식</u>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p> <p>3. ~ 6. (생략)</p> | <p><b>제21조(병해충의 방제)</b> -----</p> <p>----- <u>각호</u>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바꿔심기</u>·<u>메워심기</u> -----</p> <p>-----</p> <p>3. ~ 6. (현행과 같음)</p> |
| <p><b>제23조(지형과 토양 보호)</b>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p> <p>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u>각목</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다. (생략)</p> <p>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 5. (생략)</p>        | <p><b>제23조(지형과 토양 보호)</b> -----</p> <p>-----</p> <p>1. ----- <u>각목</u>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그 밖에</u> -----</p> <p>2. ~ 5. (현행과 같음)</p>         |
| <p><b>제25조(점검) ①(생략)</b></p> <p>②점검대상은 <u>깎신</u>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u>보식</u>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p> <p>③(생략)</p> <p>④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u>보식</u>·<u>깎신</u>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p>                 | <p><b>제25조(점검) ①(현행과 같음)</b></p> <p>②----- <u>바꿔심기</u>를 -----<br/>----- <u>메워심기</u>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바꿔심기</u>·<u>메워심기</u> -----</p>                        |

| 현행   | 개정안   |
|--|---|
| <p><b>제26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b>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b>②</b>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b>③~④(생략)</b></p>   | <p><b>제26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b>-----<br/>-----<br/>-----<b>각 호</b>-----<br/>-----</p> <p>1. ~ 5. (현행과 같음)</p> <p><b>②</b>-----<b>각 호</b>-----<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b>③~④(현행과 같음)</b></p>   |
| <p><b>제27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b></p> <p><b>①</b>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b>②</b>제22조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p> | <p><b>제27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b></p> <p><b>①</b>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b>②</b>제22조에 따른 -----<br/>-----<b>위탁할 경우</b>-----<br/>-----<br/>-----<b>「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b>-----</p> |
| <p><b>제28조(훼손자부담금) ①</b>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p> <p><b>②~③(생략)</b></p>  | <p><b>제28조(훼손자부담금) ①</b>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b>②~③(현행과 같음)</b></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3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 <p>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p> <p>②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③신고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은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p> <p>④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li> <li>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li> <li>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li> <li>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li> </ol> <p>제33조(보호수·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br/>-----<br/>-----</p> <p>③(현행과 같음)</p> |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1894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무분별한 가로수 신고를 방지하고자 포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가로수 훼손 신고인이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제3항)
-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31조 제4항)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 전 훼손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4.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조 문 대 비 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31조(신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최초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은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와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④ (생략)</p> | <p>제31조(신고) ① -----<br/>-----<br/>-----<br/>----- &lt;단서 삭제&gt;</p> <p>1. ~ 4.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br/>-----<br/>-----<br/>-----<br/>----- &lt;단서 삭제&gt;</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p> <p>2.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p> <p>3. 신고 전 훼손자가 자진신고한 경우</p> <p>4.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p> <p>⑤ (원안 제4항과 같음)</p> |